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7월 22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춘 용

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8년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가. 「비료관리법」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부서의 개정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,
- 나.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비료생산업 등록 등 6개 항목의 수수료를 삭제함(안 별표 2).
- 나.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(신규)등 4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함(안 별표 2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비료생산업 등록 등 2개 항목과 수수료를 면제토록 변경된 납품 또는

공사 사실증명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3개 항목 등 총 6개 항목을 삭제하고,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항목의 대통령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4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